

#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4차) 운영 안내

<24.8.12.(월), 산업보건기준과>

## 1 교육 개요

- 교육대상: 보건업(병원 등) 사업장 소속 전문의로서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 교육인원: 100명
- 교육기간: 2024.9.25.(수) ~9.27.(금) <08:40~17:30, 단 9.27.(금) 08:40~18:30>
- 교육방식: 집합교육(숙박 및 식사 미제공)
- 교육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1003호(서울 서초구)  
※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으며,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총 25시간
- 교육내용: KOSHA가이드, 실무지침 내용 포함한 이론과 실무

## 2 등록 방법

- 교육 신청 방법: 등록신청서 작성(\*하단 링크) 후, 등록비 입금  
※ 등록신청서와 등록비 입금이 모두 확인되면 확인 메일 및 영수증 보내드립니다.
- 등록 기간: 2024년 8월 7일(수) ~ 9월 13일(금)
- 등록 링크: <https://forms.gle/fD6wFNp7BcgTzRN9>



산업보건의 교육 등록

←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화면으로 이동

- 교육비: 30만원
- 교육비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3-673744 (예금주:대한직업환경의학회)  
※ 계산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학회 메일(ksoem01@naver.com)로 사업자 등록증과 등록자 분의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후 계산서 발급해 드립니다.

- 교육신청 관련 문의: **교육 관련 문의는 학회 메일(ksoem01@naver.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확인 후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이 많아 우선보다는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3** 과정 운영

- 수료기준
  - 학습평가 점수 60점 이상이고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이수
    - ※ 강의 주제별로 2개씩 시험문제 출제(객관식 또는 짧은 주관식 가능)
  - 수료증은 교육 마지막 날 교부
- 교육 참여 자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동일 거소 가족 중에 확진자, 격리자가 있거나 확진자 접촉 경우
- 마스크 착용 권고
  - 교육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교육기간 중 지각 및 이석 등 근태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기준에 따름

**※ 본 교육은 등록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 교육이 취소됩니다.**

- 교육이 취소 될 경우, 등록기간 이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고, 등록비 환불 처리 예정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세부 교육프로그램

시간	9/25(수)	9/26(목)	9/27(금)
1차시 8:40~ 10:30	사업장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	야간 및 교대작업: 건강영향과 특수건강진단, 관리	보건의료업종의 감염병 관리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장태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10:30~ 10:40	휴식시간		
2차시 10:40~ 12:30	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관련성 평가 및 직장 복귀 사례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관리	뇌심혈관 발병 위험도 평가 및 관리
	김은경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박신구 (인하대학교병원)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12:30~ 13:30	점심시간		
3차시 13:30~ 15:20	산업보건이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 등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보건의료업종의 산업보건관리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민지희 (한양대학교병원)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15:20~ 15:30	휴식시간		
4차시 15:30~ 17:30	산업보건 위험성 평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인간공학적 평가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양선희 (위드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위드의원)	이철호 (터직업환경의학센터)
17:30~ 18:30	평가		

### 1 지침 시달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자격자가 부족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2222)”을 시달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보건업\*\*에서 여전히 부족을 호소
  - \* 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의사도 산업보건의로 위촉 가능, ②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자에서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은 지침변경으로 부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보건업은 여전히 부족
- 이에 보건업의 경우 소속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의학과 전문의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지침 변경함

### 2 행정해석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기존	변경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	1.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전임으로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2.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3. <b>(신설)</b> 보건업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를 자체 선임할 경우,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가 실시하는 25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단 이 경우에는 연 10시간 이상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보건분야 전문교육*에 참가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

### 3 적용지침

- 적용 시기 : 지침 시달일부터 별도 지침 변경 전까지 적용